

2026 전남문화재단 대표 공연 콘텐츠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 제한공모

지역 대표 공연 콘텐츠의 타 지역 · 권역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
2026년도 전남문화재단 대표 공연 콘텐츠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 제한
공모를 시행하오니,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.

[필독 : 부정청탁금지에 관한 안내]

저희 재단에서는 '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'에
따라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
이번 공모와 관련된 부정청탁이 적발될 경우, 같은 법률 제7조(부정청탁의
신고 및 처리)에 의하여 청탁인과 해당 지원단체 및 개인에게 과태료 및
보조사업 수행배제, 지원금 전액 반납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
부정청탁 방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6년 7월 13일

재단법인 전라남도문화재단 대표이사

2026 전남문화재단 대표 공연 콘텐츠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 제한공모

1. 공모개요

구 분	주요내용
사업명	2026 전남문화재단 대표 공연 콘텐츠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
신청대상	전남문화재단 공연장상주사업 선정되어 지원받은 단체 ※ '25~'26년 사업명 : 공연장 협력 예술단체 지원사업
지원내용	3개 단체 내외(단체별 60백만 원 내외)
사업내용	서울 외 최소 1개 타 지역·권역 공연장에서 총 1회 이상 공연 진행

2. 공모일정

구 분	일 정
접수기간	2026. 7. 13.(월) ~ 8. 3.(월) / 22일간
심의기간	(행정) 2026. 8. 5.(수)
	(서류) 2026. 8. 6.(목)
	(인터뷰) 2026. 8. 10.(월)
결과발표	2026. 8. 11.(화) / 전남문화재단 누리집 및 NCAS 공지

※ 상기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
3. 신청방법 ※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

○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www.ncas.or.kr)을 통한 온라인 신청 접수

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사용방법

- ① 시스템 접속 ② 회원가입(단체, 개인 구분 필수) ③ 지원신청 사업 선택
④ 지원신청서 작성 ⑤ 최종제출하기 클릭 ⑥ 지원신청내역 확인

※ 자세한 내용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참고

※ 지원신청서 작성 전,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회원정보는 반드시 최신 정보로 수정
(로그인 > 마이페이지 > 비밀번호 확인 > 마이페이지 정보수정)

※ 단체명이나 대표자 변경이 된 경우, 변경신청 완료 후 지원 접수

○ NCAS 고객센터 : 1577-8751 ※ 이용시간 : 09:00 ~ 12:00, 13:00 ~ 18:00



주요 안내사항

1. 지원신청 요건

1. 지원신청 자격

- 전남문화재단 공연장상주단체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문화예술 단체
 - ※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해 소재지 확인
 - ※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NCAS) 회원가입 후 지원신청 가능
(단체의 경우, 사업자등록증/법인등록증/고유번호증 발급되어 있어야 함)

2. 단체 지원 제외 대상 *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

- 청소년, 시민(아마추어)단체의 공연 작품
- 국고보조금으로 당해 연도 지원받은 공연 작품
- 당해 연도 5월까지 초연되지 않은 신작

3. 지원신청 부적격 사업

- 단체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
- 시설건립, 매입, 재건축 사업
- 보조금을 통한 재교부, 기금적립, 융자지원비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
- 동일 내용으로 당해 연도 공모사업으로 문예진흥기금, 국비, 지방비를 지원받은 사업

4. 부적격자 및 부적격 사업 응모 시 처리

- 심의위원회에서 결격사유 검토 및 심의점수 '0'점 처리
- 심의위원회 의결 이후 지원 대상 제외, 선정 이후 제한 대상으로 판명될 경우, 지원 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

5. 지원자 책임신청제 운영

- 지원 신청자의 판단과 선택을 존중하는 의미로 '지원자 책임 신청제' 운영
- 지원자 책임신청제는 지원 신청 시 전문 예술인으로서의 신청자격과 활동 경력 등에 대하여 신청 주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제도
- 전남문화재단은 이를 신뢰하고 인정하며 별도의 조정 없이 심의를 진행할 예정
- 부정확한 정보와 제출 자료 등으로 인해서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
- 신청 주체인 예술단체에서는 이를 유념하여 공고 내용을 숙지한 후 책임감 있게 신청해주시기 바람

6. 관련법령 및 제도 준수

- 「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」(이하 「예술인권리보장법」) 제정(2021. 8. 31.)
- 사업 신청 단체는 「예술인 권리보장법」의 준수를 위해 청렴이행서약서 및 성희롱·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를 필수 제출해야 함
- 관련 사안이 발생한 경우 조사 결과에 따라 처벌 또는 처분 조치가 진행될 수 있음
- 예술인 고용보험가입 등 제도 이행 : 지원사업 내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로 문화예술용역 계약 체결에 따른 예술인 및 사업자의 고용보험료 책정과 신고·납부 필수

7. 관련 규정, 법률 및 지침 위반 행위자 지원불가

-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
 - * 단,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,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
- 성희롱·성폭력 등의 사유로 기소 중이거나 형 집행 중인 자
-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 2에 따른 불공정행위의 금지 위반으로 신고가 되거나 시정조치를 받은 개인·단체
- 지원신청 사업과 관련하여 표절,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형 집행 중인 개인·단체
- 공금횡령 또는 금품수수 등 각종 부패행위에 연루되거나 관련된 개인·단체

2. 지원신청 및 사업운영 준수사항

지원신청	· <u>단체의 자부담 편성 의무 없음 (자율결정)</u> · 공모 사업 신청자격, 필수 제출서류 등 확인 · 지원사업 관련 법률 및 규정 사전 숙지 및 준수 ·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시, 교부취소 및 보조금 반환 등 행정 조치 · 지원사업 선정에도 <u>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결과발표 후 1개월 이내에 '사업포기 신청서' 제출 필수</u> ※ 기한 내 사업포기 시 2027년도 사업 신청에 불이익 없음. 결과발표 1개월 이후에 타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 2027년도 문화예술지원사업 신청 제한
교부신청 및 예산편성	· 지원 확정 이후 사업명칭·사업비용·사업내용 변경은 불가, 교부신청서 작성 시 사업예산 사용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 제시 · <u>사업 시작 2개월 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NCAS)을 통한 교부신청(사업등록) 필수</u> · 사업 수행 후 보조금 교부신청 불가 · 지원신청 대비 총 사업비 변동이 심할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· 문화시설 인프라 구축 및 경상운영비와 같이 사업목적 외 용도로 예산 사용 불가 ※ 사업 내용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단 담당자와 반드시 사전 협의
사업수행	· 지원 확정 시 재단이 추진하는 워크숍 및 컨설팅, 평가, 교육 참석 필수 · 사업 선정 후 보조사업 전용 통장 및 보조사업비 카드 개설 · <u>사업 수행 시 안전관련 계획 수립, 교육 수강, 보험가입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조치 처리</u> · <u>사업 수행 시 각종 홍보물 및 결과물에 후원 사업임을 명시</u> ※ 후원 :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, (재)전라남도문화재단 · 사업 수행 시 문화체육관광부가 보급하는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 체결 · 사업 홍보를 위해 재단 담당자의 사업 관련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 · 일부 사업은 현장평가 진행, 평가 결과는 다음 해 사업지원 신청 시 심의자료로 활용 · <u>최종 사업비 집행은 사업 기간 마감일(2027. 4. 30.)을 반드시 준수</u> · 지원 확정 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은 사실이 밝혀졌을 때, 당초 계획을 재단 승인 없이 변경하여 수행하였을 경우, 지원금 교부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
사업정산	· <u>집행정산 및 정산보고서 2027년 5월 말까지 제출</u>,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 ※ 정산보고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, 향후 지원 신청 시 불이익 조치 ※ 정산 증빙자료는 사업운영 매뉴얼 내용 참고

3. 보조금 예산편성(예시)

예 산 편 성 기 준			
세 목	항 목	용 도	비고
일 반 수용비	사례비	· 출연료, 연출료, 대본료, 작곡비, 평론 및 자문료 등 · 스태프, 단기 보조(일용직), 작업 보조 등	사업자 등록업체 거래, 개인 간 거래 불가
	발간비	· 서적, 도록, 작품집 등 발간	
	홍보 및 마케팅	· 홍보물(현수막, 리플릿, 포스터 등) 및 광고비 등	
	재료비	· 작품 유통에 필요한 (소모성) 재료 구입비	
	수선비	· 무대, 세트 의상, 소품 등 수선비	
	수수료	· 회계검증 수수료(자부담, 수익금 포함 총 사업비 기준)	
임차료	장소대관 · 시설·장비 임차료	· 공연장, 전시장, 회의장, 부대시설 등 대관료 · 의상 및 소품(대소도구, 악기) 대여비 등 · 음향, 조명 등 시설 및 장비 임차료 · 출연진 이동 버스, 용달비 등 차량 임차료	
복 리 후생비	복 리 후생비	· 예술인 고용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· ‘특정 문화예술 결과물의 완성을 위해 예술인이 대가를 받고 일정 기간 동안 제공하는 창작·실연·기술지원 등의 노무’를 제공했다면 예술인고용보험은 의무 가입해야하므로, 예술인고용보험료 편성 필수 · 월평균보수(월평균소득 × 0.75) × 1.6% (0.8%는 사업자부담분으로 별도 편성, 0.8%는 예술인부담분으로 사례비에 포함) 납부 ·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고용보험 보험료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여 소요예산 예측 (https://www.kawf.kr/aei/emplnsNormalCal.do)	
기 타 운영비	기 타 운영비	· 사업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기타비용 (운송비, 상해보험료 등)	

보조금 편성 및 집행 불가 항목

항 목	용 도
개인·단체의 일상적 운영경비	· 상근직원 인건비, 사무실 임대료, 공과금, 전화요금 등 일상 운영경비 · 시설비, 수선비, 시설부대비, 전화설비 등 · 회의비(식비, 다과비), 주류 ※ 사용 시 보조금 환수 · 상금, 상금 심사비 등
자산취득비	· 사업 종료 후에도 자산 성격으로 지속사용 가능한 물품에 대한 경비 예) 노트북, 모니터, 프로젝터, 그래픽카드, 음향 장비 구입 등 ※ 단, 아래에 해당하는 물품은 보조금 사용 인정 ① 개별 가격 10만 원 미만의 소모성 물품 ② 공연·작품·전시에 직접 사용된 물품비 - 해당 물품은 재료비로 간주하며, 담당자와 사전 협의 필요 - 정산 시 해당 물품을 사용하였다는 추가 사진증빙을 요청할 수 있음
행사답사비 등 여비	· 교통비(항공권 포함), 숙박비, 유류대 등
기타사항	· <u>공연 유통 목적이 아닌 공연 제작비 내용으로 예산편성 불가</u> · 개인 경우 보조금 수령자 본인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성 사례비 편성 불가 · 보조금 수령자(단체 대표자)가 대표자나 임원으로 있는 업체와의 거래 · 보조금 수령자(단체 대표자)의 가족이 대표자로 있는 업체와의 거래 · 업무추진비 등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간접 경비 · 수수료(문자서비스, 공동인증서 발급, 이체 수수료 등) · 세금·보험료 납부 시 발생한 가산세, 과태료 · 지원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 업체 거래
부가가치세 등	· 보조금을 수령 받는 단체가 과세사업자일 경우 지원금으로 부가가치세 사용 불가 ※ 단체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일 경우, 지원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추후 반납하거나, 환급 대상비용을 사전에 자체자금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


사업 공고문

2026 전남문화재단 대표 공연 콘텐츠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은 지역 대표 공연 콘텐츠의 타 지역·권역 유통을 추진하고, 지역 여건에 따라 공연시설 협의, 홍보·모객, 지역 네트워크 연계 등 협력형 유통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.

사업개요

- ◆ 공연기간 : '26. 8. ~ '27. 3.
- ◆ 공연장소 : 구)전라남도 내 타 시·군 또는 구)전라남도 외 타 시·도 공연장(서울 제외)
- 예시) 타 지역 : 목포 소재 공연단체가 여수 공연장으로 유통
- 타 권역 : 구)전라남도 공연단체가 구)광주광역시, 경기도 등 공연장 유통
- ◆ 신청대상 : 전남문화재단 공연장 상주사업 선정되어 지원받은 단체
- ※ 타 지역·권역 공연장과 협약 필수

지원유형

구 분	육성지원
지원목적	지역 대표 공연 콘텐츠 타 지역·권역 유통 추진
핵심내용	대표 공연콘텐츠의 타 지역/권역 유통 활성화 지원
지원규모	3개 단체 내외 (단체당 60백만 원 내외) ※ 공연 유통 목적이 아닌 공연 제작비 예산편성 불가
필수사항	· 최소 1개 공연시설 1회 이상 공연 진행 · 1만원 이상 유료 티켓 판매 ※ 유료 티켓 판매로 발생한 수익금은 예술경영지원센터 지침에 따라 처리 예정이며, 자세한 기준은 별도 안내 예정

※ 지원규모는 국비 보조금 지원 최대 금액이며, 심의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

수행 프로그램

◆ 협약 공연장에서 공연 추진을 원칙으로 함

구 분	사 업 내 용
필수 프로그램	대표 공연 콘텐츠 (1 작품 이상)
	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작품이나 기존 공연했던 우수 작품 공연, 총 공연 시간 50분 이상 ※ 단체 보유 및 기존 공연 증빙 필요(하이라이트 영상 필수)

주체별
역할

◆ 공연예술단체

- 연극, 무용, 음악, 전통예술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창작 및 공연활동 진행

분야	지 원 대 상
연극	연극분야(아동·청소년극, 뮤지컬 포함) 전문극단
무용	한국무용, 현대무용, 발레 등 전문 무용단
음악	실내악단, 교향악단, 합창단, 중창단, 오페라단 등 창작·연주 전문단체
전통예술	음악, 무용, 연희 등 전통예술 창작·공연 전문단체

◆ 공연장

- 구)전라남도 내 타 시·군 또는 구)전라남도 외 타 시·도 공연장으로서, 공연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(공연장 등록증 필수 제출, 민간 공연장 가능)

- 공연장 필수 역할 : 관객 모객 전략(유료화 포함), 티켓 가격 책정 및 판매 구조 설계, 현장 운영·행정 지원

※ 협약 주요내용

- 협약 목적 및 사업추진 준수사항 : 사업 기획 및 운영 상호 협력

- 공연장 이행사항 : 공간, 인력, 기타 홍보·마케팅 협력 등

사업추진
절 차

사업신청 '26. 7. 13. ~ 8. 3. (18:00)	>	선정심의 '26. 8. 5. ~ 10.	>	선정발표 '26. 8. 11.	>	선정단체 워크숍(8월) / 전문가 컨설팅	>
보조금 교부 및 사업수행	>	전문가 현장평가 / 만족도 조사	>	성과공유회	>	정산 및 실적보고	

심의운영

◆ 심의방법

- 공연단체 심층 인터뷰

※ (예시) 공연단체 담당자가 “어떤 방식으로 공연 콘텐츠 유통 등을 수행할 것인지” 설명 등

-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결정

◆ 심의절차 및 기준

1차 행정심의	신청자격 부합여부, 필수자료 제출 등
2차(서류·인터뷰) 심의위원회	사업목적/기획의도 적절성, 사업의 예측성과, 사업실행 가능성, 예산편성의 적절성, 공연단체-공연장 협력도 및 적절성, 홍보 및 관객 개발 계획 타당성 등 6개 항목

단체 제출자료

1. 지원신청서 ▶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NCAS)에서 작성

2. 첨부자료

가. 사업계획서

- 별첨 서식(서식 1) 작성 후, 첨부
- (파일명) 대표 공연콘텐츠 유통 활성화 지원_사업계획서_단체명

나. 예산계획서

- 별첨 서식(서식 2) 작성 후, 첨부
- (파일명) 대표 공연콘텐츠 유통 활성화 지원_예산계획서_단체명

다. 증빙자료

- 별첨 서식(서식 3) 작성 후, 첨부
- (파일명) 대표 공연콘텐츠 유통 활성화 지원_증빙자료_단체명

① 고유번호증 / 사업자등록증 / 법인등록증 중 1개

② 단체의 예술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대표 실적자료 5개 이내
※ 공연명, 공연일시, 주최·주관, 출연자, 공연내용이 확인 가능한 자료여야 함
※ 최근 활동 순으로 5건까지 인정

③ 공연단체 단원 명단
※ 단체 단원 이름, 직함(역할), 간단 이력, 주요 참여 공연 및 역할

④ 공연장 등록증

⑤ 공연장 정보 및 운영현황

⑥ 대표 공연 콘텐츠 관련 자료(단체 작품 보유 증빙(저작권 계약서) 등)

라. 단체-공연장 간 협약서

- (파일명) 대표 공연콘텐츠 유통 활성화 지원_협약서_단체명
※ 협약서는 별도 서식은 없으며, 상호 협의하여 작성

※ 대표 공연 콘텐츠 '작품 영상(하이라이트)' 제출

* 필수 제출자료 미제출·미비 시 '행정 결격' 으로,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* 필수 제출자료 이외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.

※ 사업 관련 문의처 : 061-280-5823